

추가 고소장(피고소인 추가)

고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 별관 5, 6층

위원장 장창열

고발인

최현환

피고소인

8. 이배원

9. 타카하시 나오키(Naoki, Takahashi)

10.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

위 피고소인 8, 9, 10의 주소 및 연락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40

전화) 031-680-4141 / 4123 팩스) 031-680-4133

1. 피고소인 추가

고소(발)인은 2025. 6. 18. 자로 접수한 고소·고발장(피고소인 1 내지 7이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 4호를 위반하여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고소취지 및 고

소원인은 동일하되, 피고소인 8. ~ 10.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당사자의 지위

피고소인 8. 이배원(2014. 7. 1. ~ 현재)과 피고소인 9. 일본국인 타카하시 나오키(2023. 7. 21. ~ 현재)는 각 피고소인 10. 한국니토옵티칼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피고소인 8. 과 9. 는 현재 각 피고소인 3. 의 부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8. 과 9. 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피고소인 10. 의 운영과 피고소인 3. 의 한국내 편광필름 사업을 총괄해왔습니다.

Vice Presidents <small>(as of July 1, 2022)</small>		
Name	Title (Position)	Responsibilities
Hideo Takasaki	Representative Director, President CEO, COO	
Bae-Won Lee	Senior Vice President General Manager of South Korea Representative Director and President, Korea Nitto Optical Co., Ltd.	Management of South Korea and information fine materials business

피고소인 8. 이배원은 이 사건 화재 이전부터 피고소인 3. 의 부사장으로 피고소인 3. 의 한국 내 사업 총괄자이자, 피고소인 10. 의 대표이사였습니다.

Vice Presidents		
<small>As of June 20, 2025</small>		
Naoki Takahashi	Vice President General Manager of Supply Chain Management Division	Procur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피고소인 9. 타카하시 나오키는 현재 피고소인 3. 의 부사장으로서는 공급망 조달 담당자입니다.

피고소인 10.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이하 ‘피고소인 10. 한국니토옵티칼’ 이라 합니다)는 1999년 11월 5일 평택에 설립된 회사로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약 1,000명을 상시 고용하여 액정표시 장치용 편광필름의 제조·가공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소인 3. 니토덴코가 피고소인 10 한국니토옵티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피고소인 8. ~ 10. 의 사용자로서의 지위

노조법상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입니다(제2조 제2호).

피고소인 10. 한국니토옵티칼은 고소인과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고소인 조합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10. 은 2022. 10. 4. 피고소인 6. 의 구미공장 화재 발생 직후부터 기존 고소인 조합원들이 위 구미공장에서 담당하였던 편광필름 후공정 업무의 대체생산(alternative production)을 개시하였고, 여전히 국내외 고객에 편광필름 공급을 위한 편광필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 6. 18.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고소인 1. 내지 7. 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 화재 직후 피고소인 6.을 위장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3.의 한국 내 편광필름 사업 단위의 일부인 피고

소인 10. 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소인 10. 은 고소인 및 고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10. 은 피고소인 3. 니토텐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피고소인 3.의 한국 내 편광필름 생산판매 및 타생산거점의 보충(back-up)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일부이므로, 고소인 및 고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은 법인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 단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 3. 이 2022. 12. 경 한국 내 편광필름 사업 중 일부를 구성하였던 피고소인 6. 한국옵티칼에 대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10. 은 고소인 및 고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여전히 공동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8. 과 9. 는 피고소인 10.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소인 3. 의 부사장(vide president)로서, 한국 내 편광필름 사업을 담당하는 경영자이므로 역시 고소인 및 고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 8. ~ 10. 은 고소인 및 고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소인 1. ~ 7. 과 공모하여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 4호를 위반하여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3. 이 피고소인 6. 에 대한 사업 폐지를 하고 청산결정을 한 이후 피고소인 10.에서 대체생산을 한 이후부터 고소인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온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2025. 6. 26.

고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창열 (인)

고발인

최현환 (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귀중